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70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강경숙·차규근·황운하

김준형 · 정춘생 · 김재원

신장식 · 서왕진 · 강유정

백선희 • 김선민 • 김문수

진선미 • 고민정 • 문정복

의원(15인)

제안이유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법령 등에서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개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하여 본연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자주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종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각종 법령 등에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 내용이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법정의무교육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유치원 및 학교는 개별 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협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령 등에 따른 의무교육의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법령 등에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 내용이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정의무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개별 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른 협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교육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다문화 이해교육
-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8.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 9.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10.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 1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과 영양 공급 등에 대한 교육
- 12.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인성교육
- 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자전거 이

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 14.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 1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 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 16.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 19. 그 밖에 다른 법령,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 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책무)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 육의 내용이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

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